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3. 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2. 26. 권영숙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. 2. 26.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21. 3. 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권영숙 의원

가. 제안이유

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,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(1)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- (2)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함(안 제3조)
- (3)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안 제5조)
- (4) 추진사업 및 지원과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6조, 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(신준호 전문위원)

○ 조례 제정 배경

-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○ 주요 조문 검토

-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8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4조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
-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지와 사업의 구체적 지원 세부기준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산재한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제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
-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피해 요인이 되는 거목 및 고사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조기에 현장민원을 대처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- 아울러, 수목의 공공성 회복차원의 적극적인 방책이라고 판단됨.
- 향후 집행부는 개별조례에 따른 나무심기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